



2024 민간 신축 매입약정

사업안내

2024. 4. 17.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목 차

CONTENTS



- ① 매입약정사업 소개
- ② 매입대상주택 선정
- ③ 매입대상주택 선정 이후 절차
- ④ 매입약정 사업자 인센티브 안내
- ⑤ 사례로 알아보는 매입약정
- ⑥ 주요 변경사항
- ⑦ 기타 안내사항



민간 신축 매입약정이란?

공급유형에 맞는 품질 좋은 매입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민간에서 **건축 예정**이거나 **건축 중인 주택**을 사전에 매입하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매입 및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



 도입배경

생애 주기별 · 소득 수준별
맞춤형 주택 공급

우량입지 선점
품질표준화 및 고품질화 지향

정부목표 달성을 위한
대량의 주택을 효율적으로 확보

매입약정 절차

01

매입 공고

02

매도신청 및
접수

03

서류심사 및
탁상감정평가

04

매입약정 대상주택
선정심의

05

심의결과
통보

06

설계도면 협의
(인허가신청 수준)

12

3단계
품질점검

11

매입약정금
지급*

10

1~2단계
품질점검

09

매입약정
체결*

08

토지소유권 확보,
건축허가*

07

1차 감정평가 및
매입약정 대상
주택 통지

13

사용검사(승인),
소유권 보존등기 및
4단계 품질점검

14

2차 감정평가
(매매대금 확정)

15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
(계약금 지급)*

16

5단계 품질점검 완료 시
(잔금 지급)*

17

최초 입주지원

* 매입대금의 약 50%(토지선금 받은 경우 차감),
신탁방식의 경우 60%* ⑧과 ⑨의 선후는 바뀌어도 되나,
⑦의 약정통지 후 2개월 내 약정 체결해야 함

* 매입대금의 약 30%

* 매입대금의 약 20%
신탁방식의 경우 10%

매입대상주택 선정



매입대상 주택

건물 동별 일괄매입 원칙

주택유형

다가구, 공동주택(아파트 · 연립 · 다세대), 주거용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일 반

전용 20㎡~85㎡

01



다자녀

전용 46㎡~85㎡

방 2개 이상

02



고령자

전용 46㎡~85㎡

방 1개 이상
(1.5개 우대)

03



청 년

전용 19㎡~60㎡

방 1개 이상

04



신혼·신생아
I 형

전용 36㎡~85㎡

방 2개 이상

05



매입대상 주택

건물 동별 일괄매입 원칙

주택유형

아파트, 연립, 주거용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 연립에 한정)신혼·신생아
II 형전용 $36\text{m}^2 \sim 85\text{m}^2$

방 2개 이상

06



든든전세형

전용 $60\text{m}^2 \sim 85\text{m}^2$

방 3개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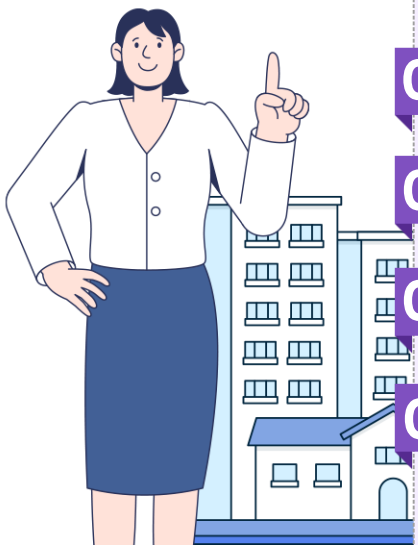
07





주요 매입제외대상

- 01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지구 및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후보지 포함),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등 개발이 예정된 지역(지구) 내의 주택
- 02 직선거리 500m 이내에 군부대 사격장·화장장과 직선거리 50m 이내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이 있는 주택
- 03 직선거리 25m 이내에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 중 일반숙박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 위락시설이 있는 주택
- 04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주택
- 05 주택 진입도로가 미확보되거나 사도인 주택
- 06 맹지 또는 타인 소유의 담장 등 시설물에 의해 부속토지가 점유된 주택
- 07 前·現 공사 직원 본인 및 직계 존·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매도하는 주택
(다만, 前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를 말함)



매입약정(감정평가) 대상주택 선정 기준

공사에서 제시한 매입기준 등에 적합한 주택 중 서류심사 및 매입심의를 통해



1 ▶ 기반시설·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 및 임대가능성

2 ▶ 대지조건, 주차계획 및 설계품질

3 ▶ 탁상감정평가 금액



등을 종합 고려하여 **매입대상주택**으로 선정

1차 감정평가 후 매입 적정성 및 가격 적정성을 검토하여
최종 매입여부 결정

매입대상주택 선정 이후 절차

매매대금 결정

제1차 감정평가

매매예정금액은 **우리공사와 감정평가협회가 1개씩 선정한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각각 감정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결정하고 매입약정 체결

제2차 감정평가

최종매매가격은 사용승인(또는 사용검사) 후 제1차 감정평가를 수행한 동일한 2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결정

매매예정금액

매입약정서상 매매예정금액은 **확정된 매매금액**이며,

- 불가피한 설계변경에 따른 세대수·전용면적의 변경, 실내인테리어 및 마감재의 시공 품질수준을 반영하고, 시장상황 변화에 따른 급격한 가격변동 위험을 상호 분담하고자 2차 감정평가를 시행
- 이 경우 매매예정금액을 기준으로 **가격상승요인은 +10% 까지**를, **하락요인은 -10% 까지**를 가격변동의 상하한 기준으로 하는 것에 이의가 없는 경우 약정체결함



매입대상주택 선정 이후 절차

매입약정 체결

- ▶ 매도신청인이 매매예정금액, 매입조건 및 계약 관련사항 등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에 본 매매계약을 체결
- ▶ **매입약정체결 통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 ▶ 매입약정 체결 후 **단순변심, 약정서상 해제사유**로 약정을 해제하는 경우 **위약금이 부과**됨



매입가격 확정 및 매매계약 체결

매입가격

- ▶ 사용승인(또는 사용검사) 및 4단계 품질점검 완료 후 제1차 감정평가를 수행한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제2차 감정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최종 매매가격**을 결정



우리 공사는 **4단계 품질점검 시 시공품질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감정평가법인에게 제공할 예정**

매입대상주택 선정 이후 절차

매매대금 지급 절차

01 토지분 선금 및 매입약정금

근저당권 설정 방식(담보신탁 포함)



구 분

선 금

매입약정금

용 도

- ① 토지소유권 취득을 위한 잔금 처리
- ② 토지등기부상 기존 근저당설정액 상환

-

지급금액

- ▶ 제 1차 감정평가금액 중 토지분 평가금액의 50% 한도 내

- ▶ 제1차 감정평가금액의 50%(토지분 평가 금액 한도) 범위 내(선금 지급된 경우 이를 차감)

채권확보

- ▶ 지급액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의 1순위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 ▶ 지급액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의 1순위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계약이행을 위한 이행지급 보증보험 가입

매입대상주택 선정 이후 절차

토지신탁 방식(관리형 · 차입형)

구 분

매입약정금(선금은 미해당)

지급금액

- ▶ 제 1차 감정평가금액의 **60% 한도** 내에서 지급

채권확보

- ▶ 공사 단독의 1순위 우선수익권 설정

* 공사 동의가 있을 경우 매도신청인 및 타 금융사를 후순위 우선수익권자로 설정 가능

02

계약금

- ▶ 사용승인, 소유권보존등기 및 4단계 품질점검을 완료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2차 감정평가금액의 80%**(토지신탁방식의 경우 90%까지 지급하며, 선금 및 매입약정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차감)를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지급

03

잔 금

- ▶ 소유권이전등기 및 5단계 품질점검 완료 후 **2차 감정평가금액**으로 정산지급



매입약정 사업자 인센티브 안내

세제혜택

규제완화

건설자본저리지원

01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개인)



내 용



거주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공공주택사업자와 약정을 체결한 자)에게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10% 감면**



적용시기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



세금추징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를 양도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주택을 건설하여 LH에 양도하지 않을 경우 주택사업자는 양도세 감면액 상당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함

02

토지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의 법인세액 추가납부 세율 배제(법인)



내 용



거주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공공주택사업자와 약정을 체결한 자)에게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10% 감면**



적용시기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

매입약정 사업자 인센티브 안내

03

참여 사업자 취득세 감면

세제혜택



내용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을 건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가 해당 주택 등을 건축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및 주택 등을 건축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 경감**



적용시기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



세금추징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 등을 착공하지 않을 경우, 최초로 취득한 주택 등을 **6개월 이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지 아니한 경우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



01

공공임대주택 용적률 완화

세제혜택

규제완화

건설자금저리지원



내 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민간 신축 매입약정 주택 포함)을 건설하는 경우 동 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도지역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용적률 완화**

※ 도시·군계획 조례에 따라 달리 적용되므로 세부내용은 해당 지자체 문의 필요



02

전용 30㎡ 미만 주택의 주차기준 완화

세제혜택



내 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세대당 0.3대 주차대수 적용가능

➔ 적용대상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도시형생활주택에 공유차량 전용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설치한 주차단위구획 수의 3.5배수에 해당하는 주차단위구획을 설치한 것으로 간주(상세 적용기준 마련예정)



적용대상

전용면적 30㎡ 미만 세대(혼합된 경우 세대별 적용)



주택유형

청년, 고령자형으로 계획하는 주택



입지기준

전국 대상

청년형

도시철도역 출구 또는 대학교 교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내

고령자형

입지제한 없이 적용



의무사항

공공주택사업자

사용검사완료일(품질점검 4단계) 1개월 내 매도요청

민간사업자

매도요청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매도(매매계약) 의무



매도의무 미이행 시 제재사항

지자체 통지

계약체결기한(2개월내) 매도하지 않은 경우 미계약한 사실을 지자체 통보
➔ 매도의무 조건 미이행에 따라 완화 전 주차기준 환원, 원상복구 불가 시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 등재

매입약정서상 위약벌

매매예정금액의 10% 위약금 부과

규제완화

건설자금저리지원

01

HUG 도심주택 특약보증 대출 운영

세제혜택

 **내 용**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특약보증을 통해 저리의 건설자금 지원

 **보증대상** ▶ 계획규모 30세대 이상의 전체 공급유형

 **보증한도** ▶ 총 사업비의 90% 이내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및 콜센터(1566-9009)

규제완화

건설자금 저리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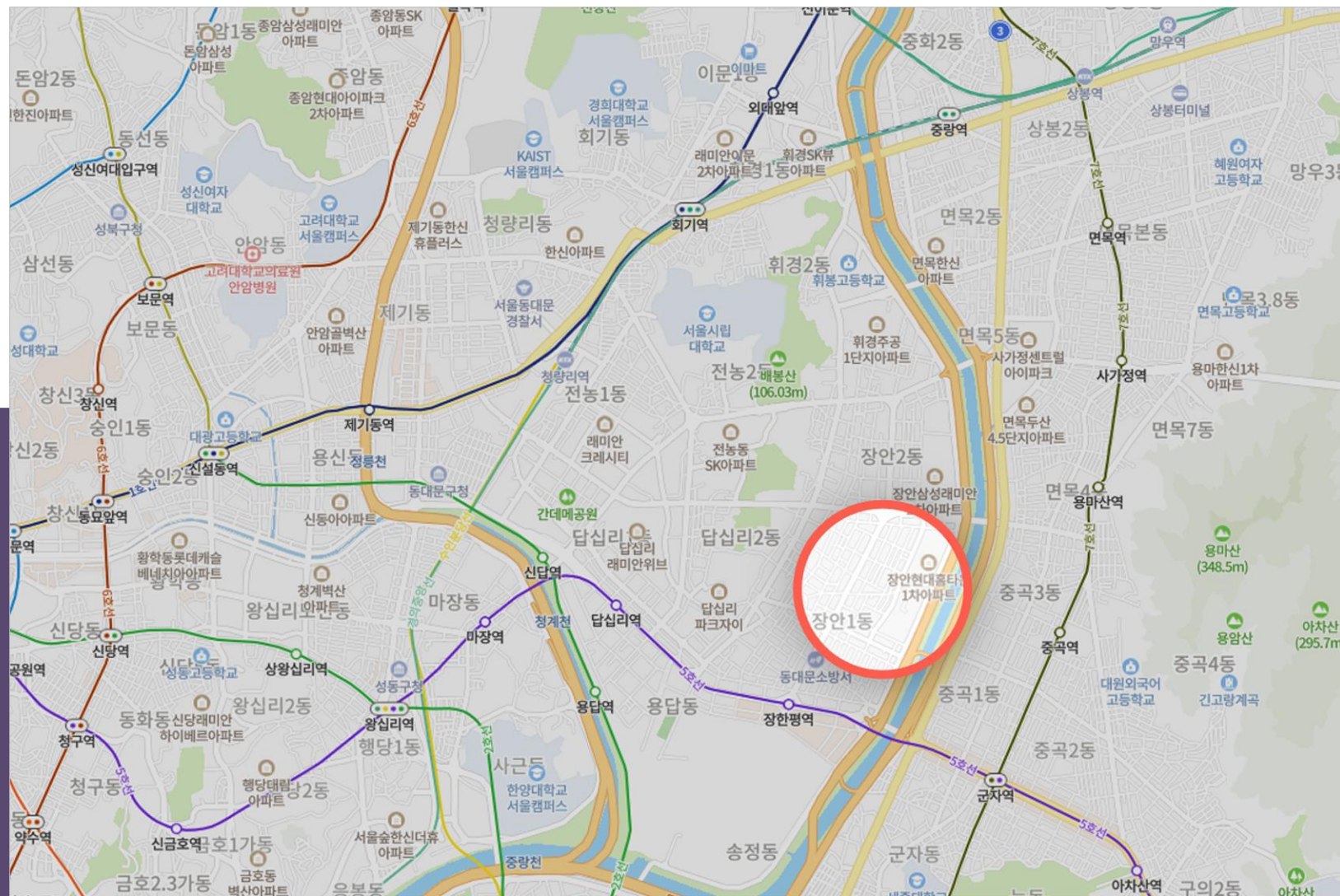
매입 선호 입지(예시)

청년

선호입지

- ▶ 역세권 등 교통 편의지역
- ▶ 대학교 인근

※ 본 지도는 사업 설명을 위한 예시로서 실제 매입심의와는 관련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매입 선호 입지(예시)



신혼부부·신생아,
다자녀, 든든전세

선호입지

- ▶ 접근성 양호한 곳
 - ▶ 초등학교 인근
 - ▶ 생활편의시설 풍부한 지역 등
- ※ 전형적인 주거 밀집지역 선호

※ 본 지도는 사업 설명을 위한 예시로서 실제 매입심의와는 관련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 매입약정 대상 주택 ·

종전 (2023년)

건축예정인 주택만 해당

* 인허가를 완료한 주택 및 기 착공 주택은 매입대상에서 제외

개선 (2024년)

건축 중인 주택도 포함

· 매도건수 제한 ·

종전 (2023년)

동일신청자의 연간 매입약정 체결
(기존주택 매매계약 포함) 건을
2건으로 제한

개선 (2024년)

4건으로 완화

· 매입가격 산정 방식 ·

종전 (2023년)

감정평가 방식을 통한 매입가격 산정

개선 (2024년)

감정평가 방식은 유지하되,
수도권 100호 이상 건물은 건물가격 산정 시
건물공사비 연동 방식 도입(토지가격은 감정평가방식 적용)

· 매입 상한가 ·

종전 (2023년)

지역별·유형별 호당 매입상한가 적용

개선 (2024년)

매입상한가 폐지

기타 안내사항

 매입물량 확대

국토교통부의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3.19)에 따라 '24~'25년 신축 매입약정 물량 확대 예정

든든전세(전세형 매입임대)

개념

무주택 중산층 가구(다자녀 등)가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로
최대 8년간 거주 가능하도록
공급하는 주택

추가 매입물량

'24년 5천호(서울 1천, 수도권 3.5천, 비수도권 1.5천)

'25년 10천호(서울 2천, 수도권 7천, 비수도권 3천)

총 매입물량

'24년 5천호

'25년 10천호

신축매입

무주택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에게
시세 30~50% 수준의 월세로
최대 20년간 거주 가능하도록
공급하는 주택

'24년 5천호(서울 1천, 수도권 3.5천, 비수도권 1.5천)

'25년 10천호(서울 2천, 수도권 7천, 비수도권 3천)

'24년 약 28천호

'25년 약 33천호



기타 안내사항

수도권 100호 이상 건물매입가격 산정방식 개선(안)

01 개정 취지

- ▶ 감평금액 산정을 통한 매입 시 건축물 설계특성* 및 부동산 경기 등 변수를 고려한 합리적 매입가격 반영 한계로 민간 품질향상 노력 견인을 위해 개선(안) 마련

* 건축물 유형(오피스텔, 도생), 지하층 규모, 빌트인 가전·가구 설치여부 등

02 매입가격 산정기준 개선(안) 검토

- ▶ **[개선방안]** 매입가격 결정 방식을 기존의 감정평가방식에서 건물공사비 연동형 건물가격 산정방식으로 변경 검토

신축 매입임대 매입가격
산정기준 개선(안)



매입가격

감정가격(토지+건물)



토지 감정가 + 건물공사비

- ▶ **[건물원가]** 매입임대주택 신축 시 소요되는 건물공사비에 물가연동률을 반영

02 매입가격 산정기준 개선(안) 검토

- ▶ 민간사업자가 산정한 건물공사비를 LH가 외부 원가산정 기관에 **검증을 거쳐 '적정 건물공사비'로 결정 후 협상**

약정(인허가)
도면 확정



민간 도면·내역서
LH제출



외부기관
검증의뢰



외부기관
결과 통보



적정 건설원가
심의, 통보 및 협상

LH - 민간

민간 → LH

LH → 외부기관

외부기관 → LH

LH → 민간

기타 안내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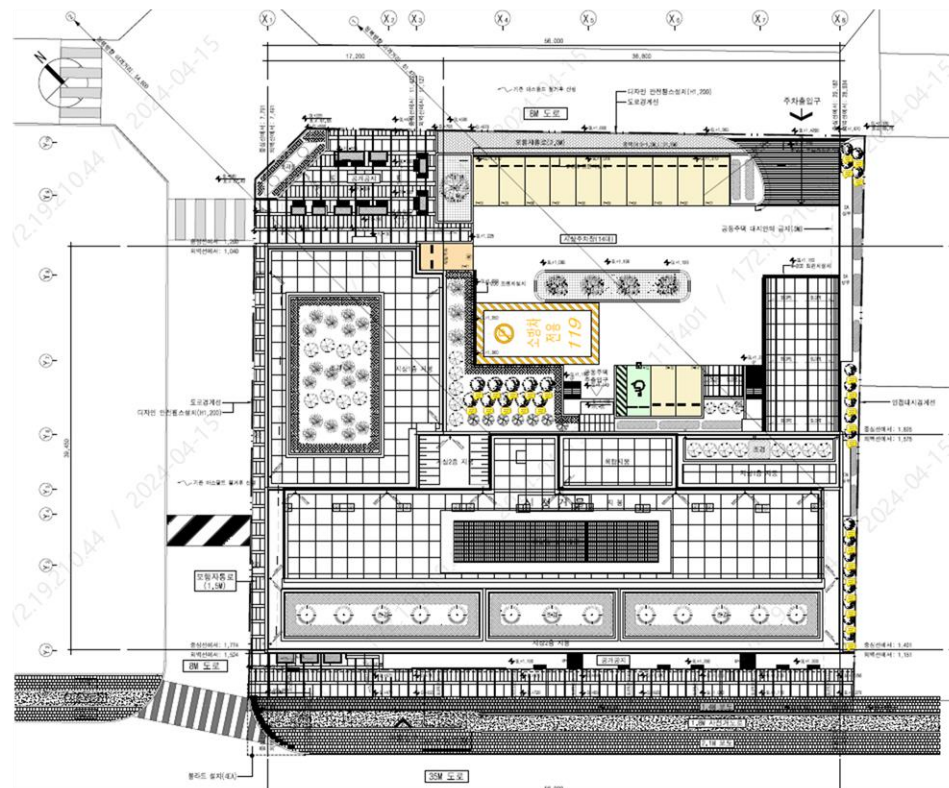
설계 관련 주요 지적 사항 | ① 공통

설계 검토를 위해서는 구체화된 설계 도면 제출이 필수이며, 설계도면이 구체화되지 않은 물건은 매입 제외 되거나 보류 조치 될 수 있음

모호한 설계 도면



구체화된 설계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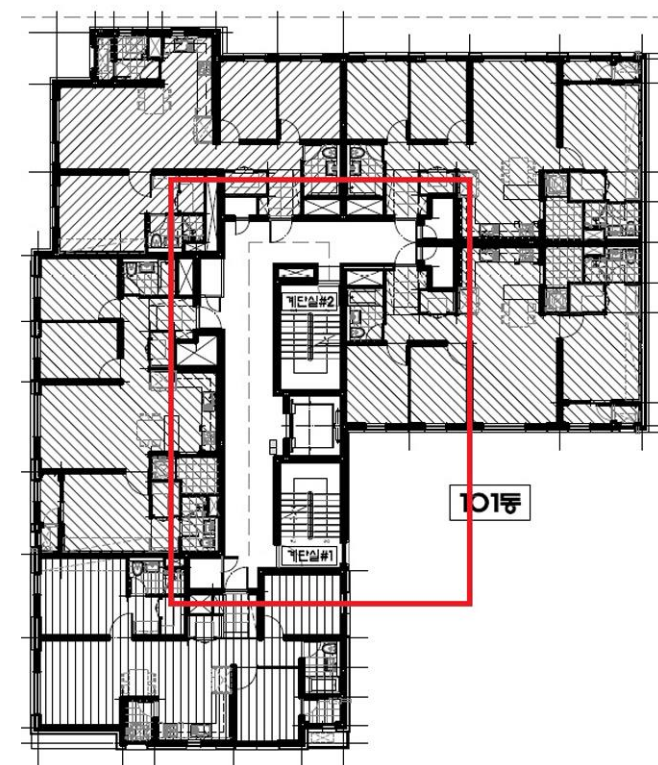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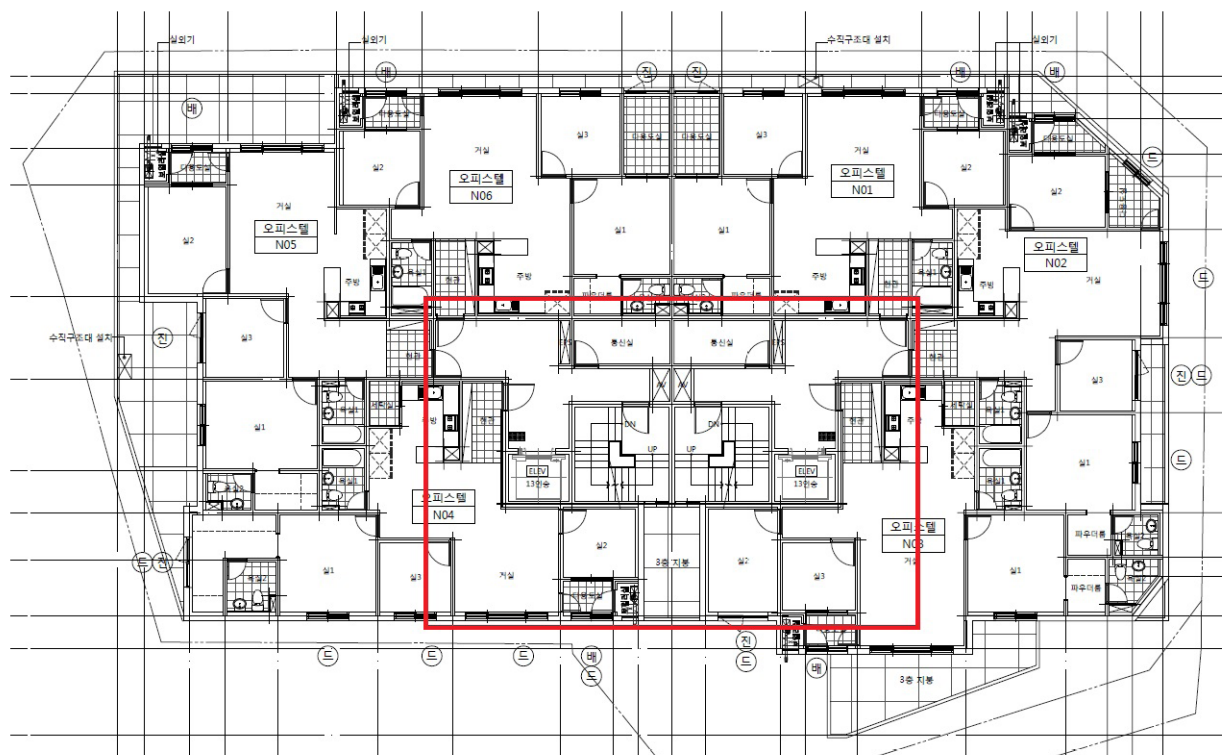


※ 본 도면은 사업 설명회를 위한 예시로서, 실제 매입심사와는 관련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기타 안내사항

설계 관련 주요 지적 사항 | ② 공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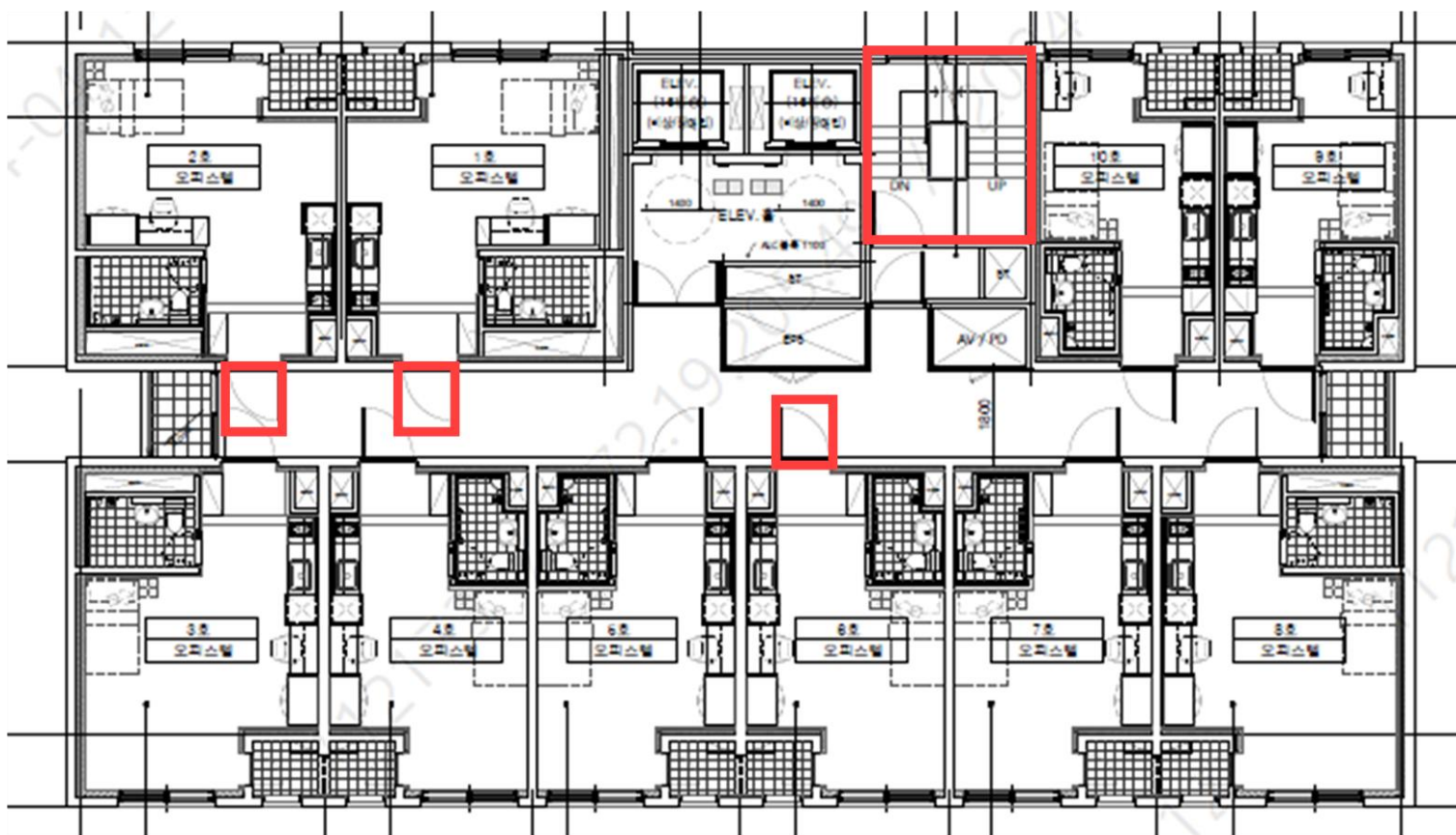
공용부 환기·채광 등 불량



※ 본 도면은 사업 설명회를 위한 예시로서, 실제 매입심의와는 관련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설계 관련 주요 지적 사항 | ② 공용부

계단실 돌음계단 금지 및 현관문 개폐방향 간섭(임주민 피난)



※ 본 도면은 사업 설명회를 위한 예시로서, 실제 매입심의와는 관련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설계 관련 주요 지적 사항 | ② 공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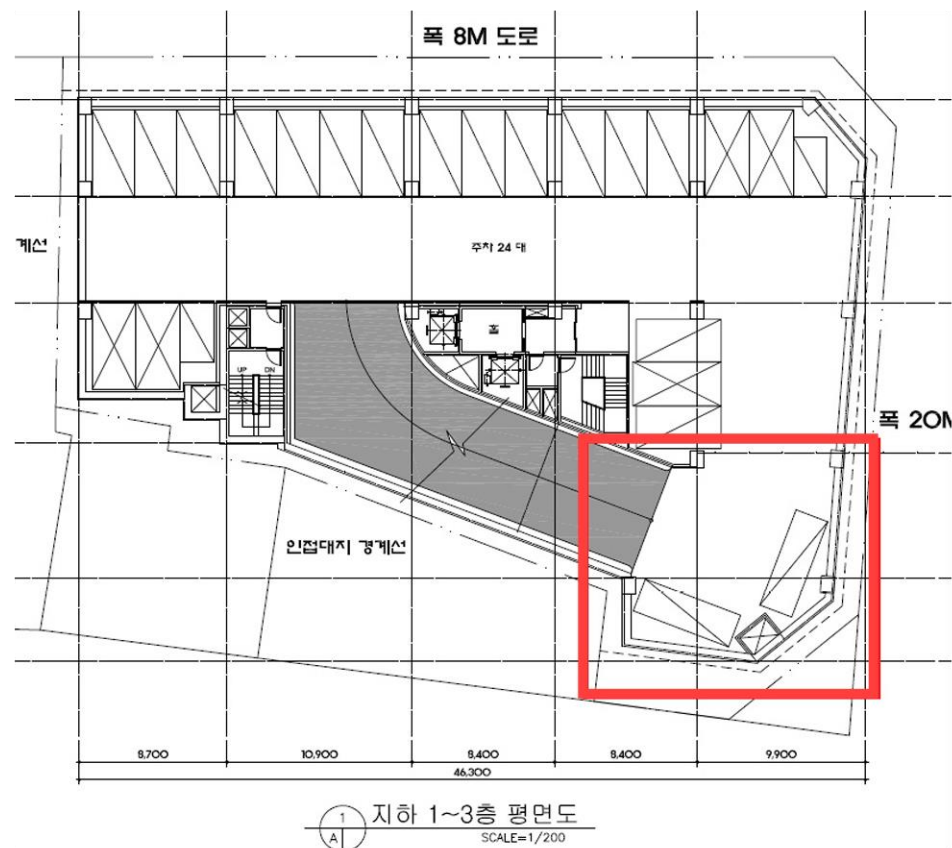
엘리베이터 한쪽 쓸림 지양



※ 본 도면은 사업 설명회를 위한 예시로서, 실제 매입심의와는 관련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설계 관련 주요 지적 사항 | ③ 주차계획

🔍 주차장 램프 안전확보 부분(램프 진입로에 위험한 주차면 삭제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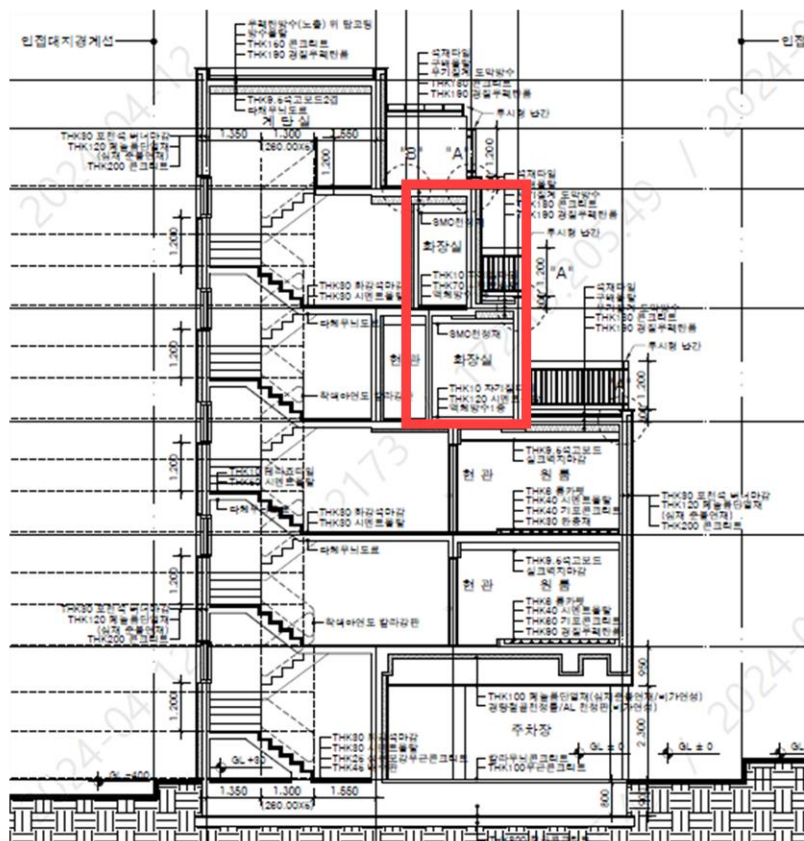


※ 본 도면은 사업 설명회를 위한 예시로써, 실제 매입심의와는 관련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기타 안내사항

설계 관련 주요 지적 사항 ④ 세대계획

🔍 세대 상,하층 욕실 위치 불일치(수직배관 설치 불가)



※ 본 도면은 사업 설명회를 위한 예시로서, 실제 매입심의와는 관련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2024 건설매입약정 시범사업

사업안내

2024. 4. 17.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입배경

30년 이상 노후 주거용
건축물 50.5% 달해

작년 전국 건축물 연면적 7509만7000㎡ 증가
축구장 1만개 수준

우리나라에 있는 건축물 41%가 30년이 넘는 건축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은 54.3%, 전국 주거용 건물 중에서는 50.5%가 노후건축물로 조사됐다.

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2년도 전국 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993년 이전에 지어져 30년이 경과된 건축물은 301만7299동으로 전체(735만4340동)의 41.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면적 기준으로는 노후건축물이 8억8410만㎡를 차지해 전체의 21.4%에 해당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노후 건물이 33.9%, 지방은 43.8%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절반이 넘는 54.3%가 노후 건축물로 나타나 전년(50.4%) 대비 3.9%p 증가했다.

용도별로는 전국 노후건축물은 주거용이 절반이 넘는 50.5%로 가장 많았고 상업용 31.0%, 교육·사회용



22.9%, 공업용 17.2% 순이었다. 주·수도권 41.1%, 지방 53.9%가 노후건축 54.3%를 기록했다.

지난해 증가한 연면적·축구장 1만개 건축물 동수는 735만4340동, 전체 연면적은 8억8410만㎡였다. 전년보다 동수는 4만76동 7509만7000㎡(1.9%)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증가한 연면적은 축구장(714아구장(2만6331㎡) 약 2852개 면적 전년 대비 1만6089동(4168만6000㎡ 1614동(41억6860만㎡), 지방은 같은 동(3341만㎡) 늘어난 530만2726동

서울 주택 늘어간다...
2채 중 1채는 30년 이상

비수도권 건물이 하늘로 치솟고 있다.

30층 이상 고층 건축 허가 면적이 수도권에서 33% 줄었지만, 지방에서는 2배가량 증가했다. 고층 건물 상위 10위 중 8개는 서울이 아니라 부산에 있다. 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2년 전국 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의 건축허가 면적은 1천665만4천㎡로 전년보다 40.4% 늘었다. 증가 폭이 2021년(32.3%)보다 커져 2년 연속 확대됐다.

수도권의 30층 이상 허가 면적은 351만6000㎡로

전년보다 33% 줄었지만, 지방은 1천98.5% 증가했다.

고층 건물 허가 면적 자체도 지방에 78.1%로, 최고층 건축물 상위 10위 중 8개는 부산, 전국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은 서울 잠실(123층·555m)로, 2017년 준공 후 6년 지켰으나, 2~8위는 부산 고층 아파트가 2019년 지어진 부산 해운대 '엘시티'(110층·318m)가 2위(80·75·70층)를 차지했다.

해운대 아이파크(72층), 부산 서구 '힐스 시티아파트'(69층)가 그 뒤를 따랐다. 지난해 아파트 허가 면적은 전년보다 19.9% 감소하고 지방에서 현재 짓고 있는 건축물 중 높이 상위 10

늘어 가는 서울...주거용 건물 54%,
지은지 30년 넘었다

서울의 건축물이 빠르게 늘어가고 있다. 서울 건축물 2개 중 1개는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2년도 전국 건축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1993년 이전에 지어져 30년이 경과된 건축물은 301만7299동으로 전체(735만4340동)의 41.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매입약정이란?

LH 노후주택의 재공급을 위해 **사업자를 공모**하여,
철거후 신축시 **매입**하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준공후 매입 및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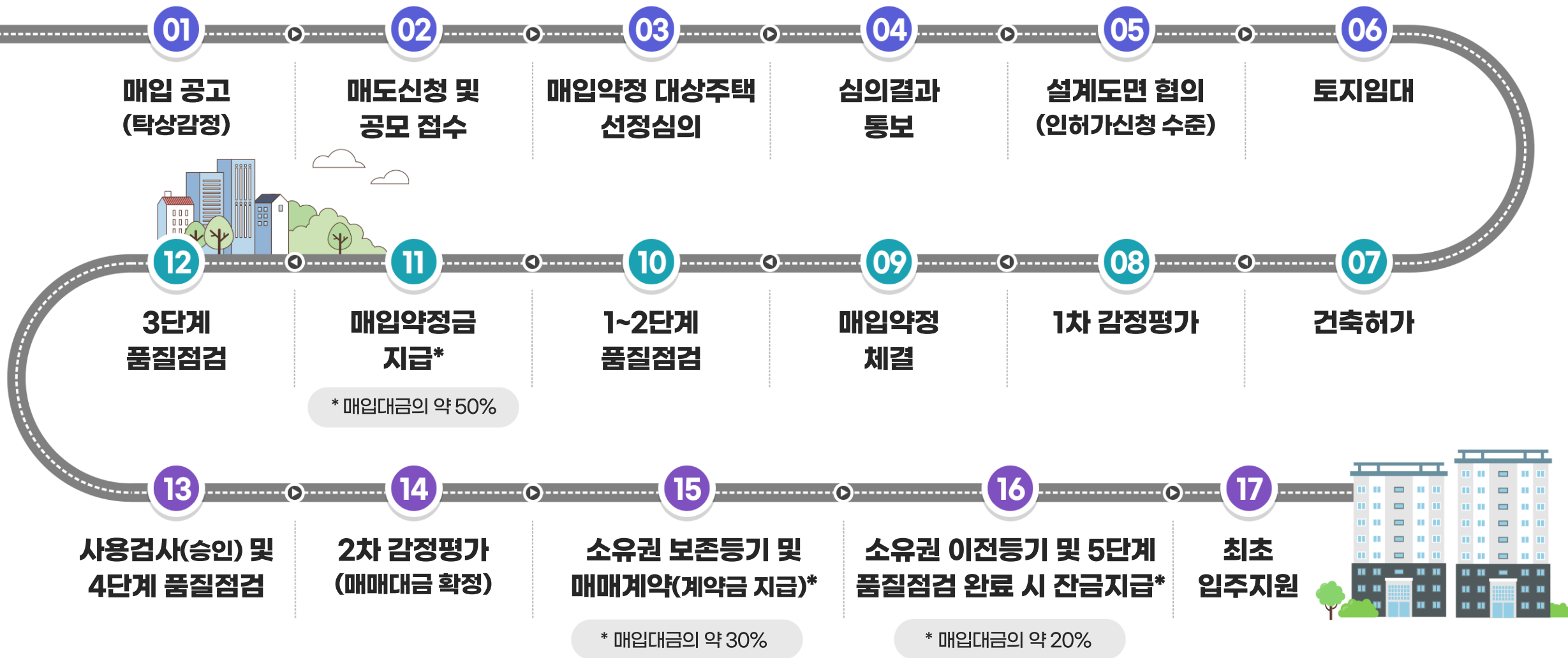
※ 토지와 건축물 전체를 매입하는 ‘민간 신축 매입약정’과 사업절차는 거의 유사하나, ‘건설매입약정’의 매입 범위는 **주택**에 한정됨



건설매입약정 사업구조



매입약정·절차



건설매입약정 주요사항

구분		민간 신축 매입약정	건설매입약정
매입가격	감정평가	LH 1개 선정 / 감정평가사협회 1개 선정 (다세대/공동주택) 사례비교법 / (다가구) 원가법 + 공시지가	좌 동 원가법*
	탁상감정	1차 감정 대상주택 선정	공고시 매입규모 제시
	1차 감정평가	평가액의 산술평균 적용 / 매입약정금액으로 활용	좌 동
	2차 감정평가	평가액의 산술평균 적용(1차 감정 ±10%내 변동) / 매매금액으로 활용	좌 동
	2차 감정평가	평가액의 산술평균 적용(1차 감정 ±10%내 변동) / 매매금액으로 활용	좌 동
품질확보	설계/마감	제시된 가이드 라인 준수	좌 동
	점 검	5단계 품질점검 / 본사 수시점검	좌 동
	사용검사	지자체	좌 동
채권보존		근저당방식 / 토지신탁방식	지급보증보험 (총 사업비 약 1.7%)
대금지급		2단계 품질점검 후 50% / 매매계약체결 후 30% / 잔금 20%	좌 동
참여지원		선금지원(토지분 20~30%) / 사업자 취득세 10% 감면	선금지원 (1차대금 30% 내) / 좌 동
주차장완화		공공주택특별법 제43조 완화된 주차장 기준 적용	좌 동

※ 기존주택의 철거수반 건설형 매입약정에 따라 매입가격중 철거비, 옵션비, 부대비 별도추가

건설매입약정 시범사업 대상

대상	현재규모		공급유형	해체/처리비용 (A)	추정 매입금액 (B)	매입공고금액 (A+B)
	층수(호수)	연면적(대지면적)				
신림동 0000	2F/1B(12호)	479.52㎡ (246.22㎡)	청년	미정	미정	미정
녹번동 0000	2F/1B(9호)	435.60㎡ (278㎡)	청년	미정	미정	미정
총 추정 매입금액						미정

※ 대상주택 최종 미확정에 따른 무기명 처리

공고계획

2024. 5~6월중
(“LH청약+”의 주택매입공고 참조)

사업설명

공고이후 별도 실시
(공고문 참조)

문의사항

055-922-4258, 4259



감사합니다

